

『유럽연합, 규정 (EU) 2024/1257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시험
방법론을 규정하는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
심층분석 보고서

2025. 5.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8703, 8704
통보국	유럽연합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8,043,883 (2024)
작성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제정 세부내용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14
붙임. 규제 참고자료	15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규정(EU) 2024/1257호 이행에 필요한 특별 기술 규정이 채택을 위해 규정(EU) 2024/1257호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유로 7’ 차량, ‘유로 7G’ 차량, ‘유로 7ext’ 차량 또는 ‘유로 7Gext’ 차량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차량의 배출 형식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 (규제요지) 인증 시험을 실패에 맞게 현대화 및 제조사 선언으로 대체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UN 규정을 참조하고 배출 형식 승인 단계의 다양한 절차 및 시험의 일관성을 보장함으로써 단순화를 달성 하고자 함

TBT 통보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1133 	<table border="1"> <tr> <td>통보일</td> <td>▪ 2025년 4월 24</td> </tr> <tr> <td>고시일</td> <td>▪ -</td> </tr> </table>	통보일	▪ 2025년 4월 24	고시일	▪ -
통보일	▪ 2025년 4월 24					
고시일	▪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1 및 N1 범주 차량의 배기가스 및 증발가스 배출 형식 승인과 관련하여 규정 (EU) 2024/1257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시험 방법론을 규정하는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 ▪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laying down rules, procedures and testing methodologi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4/1257 as regards exhaust and evaporative emission type-approval of vehicles of categories M1 and N1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European Commission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호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초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 1일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 24일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및 밴(M1 및 N1 범주 차량) ▪ Passenger cars and vans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M1 and N1)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EU) 2024/1257호에 따라 ‘유로 7ext’ 및 ‘유로 7Gext’ 로 지정된 N2.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43,883(2024)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03, 8704

□ 배출 형식과 형식별 승인 요건

- 본 규제에서는 배출 형식 승인 요건, OBD 시스템에 관한 배출 형식 승인 요건, 탑재 연료 및 전기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도구에 관한 배출 형식 승인 요건에 대해 각각 설명함

[표1] 배출 형식 승인 요건

조항	세부 내용						
1.	<p>규정(EU) 2024/1257호에 의거한 배출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조자는 다음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시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본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서 III ~ VIII · 부속서 X · 부속서 XI · 부속서 XIII · 부속서 XIV · 부속서 XVI · 부속서 XX · 부속서 XXI · 부속서 XXII 						
2.	<p>제조자는 제1항의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부속서 I의 그림 1.2.3¹⁾에서 정하는 시험의 대상임을 보장하여야 함</p> <p>- UN 규정 제154호를 언급하는 모든 경우에서 1A 수준으로 성격 지어진 유럽연합 관련 요건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UN 규정 제154호 “기준 배출물”에 대한 언급은 본 규정에서의 “오염 물질”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어야 함</p>						
3.	<p>규정(EU) 2024/1257호에 따른 배출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조자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부속서 XXI과 부속서 XII에서 하는 연료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시험도 실시하여야 함</p>						
4.	<p>형식 승인 담당 기관은 규정(EU) 2021/392호의 제14조에 따라 형식 1의 각 시험을 위한 형식 승인 시험 데이터가 기록되고 위원회의 전용 서버에 업데이트 될 것을 보장하여야 함</p>						
5.	<p>연료탱크 주입구에 대한 특별 요건은 부속서 I의 제2.2항에서 정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표1-1] 부속서 I 제 2.2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항목</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2.</td> <td>시험의 적용</td> </tr> <tr> <td>2.2.1.</td> <td>그림 1.2.3은 차량의 배출가스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적용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시험 절차는 부속서 II, III, IV, V, VI, VII, VIII, X, XI, XIV, XVI, XX, XXI 및 XXII에 설명되어 있음</td> </tr> </tbody> </table>	항목	세부 내용	2.2.	시험의 적용	2.2.1.	그림 1.2.3은 차량의 배출가스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적용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시험 절차는 부속서 II, III, IV, V, VI, VII, VIII, X, XI, XIV, XVI, XX, XXI 및 XXII에 설명되어 있음
항목	세부 내용						
2.2.	시험의 적용						
2.2.1.	그림 1.2.3은 차량의 배출가스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적용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시험 절차는 부속서 II, III, IV, V, VI, VII, VIII, X, XI, XIV, XVI, XX, XXI 및 XXII에 설명되어 있음						
6.	<p>제조자는 배출 시험 결과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조건에 의거한 규정(EU)</p>						

	2024/1257호 부속서 I에서 정하는 관련 한계값을 준수하는 것임을 보장하여야 함																		
7.	단일 연료 가스 차량은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UN 규정 제154호의 부속서 B6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본 규정의 부속서 XX에 따라 실제 출력의 측정에 사용되는 연료와 함께 LPG 또는 NG/바이오메탄의 구성 변화에 대한 유형 1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p>제조자는 부속서 V에서 정하는 유형 3의 시험에서 엔진의 환기 시스템이 크랭크 케이스 가스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표1-2] 부속서 V 크랭크케이스 가스 배출 검증(제3형 시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조항</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론</td> </tr> <tr> <td>1.1.</td> <td> <p>제조사는 엔진의 통기 시스템이 크랭크케이스 가스를 대기로 배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p> <p>- 형식승인을 목적으로, 제조사는 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크랭크케이스 배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승인기관에 서명된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p> </td> </tr> <tr> <td>1.2.</td> <td>제3형 시험 요구사항에 대한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서 서식은 본 부속서의 별첨 1(Appendix 1)에 규정되어 있음</td> </tr> <tr> <td>1.3.</td> <td>형식승인 시 승인기관이 실증 시험을 요구하거나, 생산 적합성 시험, 사용 중 적합성 검사 또는 시장 감시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본 부속서는 유엔규정 제83호(UN Regulation No. 83)의 제5.3.3항에 따라 규정된 제3형 시험 절차(크랭크케이스 가스 배출 검증 시험)를 설명함</td> </tr> <tr> <td>2.</td> <td>일반 요구사항</td> </tr> <tr> <td>2.1.</td> <td> <p>제3형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유엔규정 제83호의 부속서 6(Annex 6)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p> <p>- 단, 아래 2.2항에 명시된 예외는 제외함</p> </td> </tr> <tr> <td>2.2.</td> <td> <p>사용되는 도로 부하 계수는 차량 저부하(VL, Vehicle Low)의 계수를 적용함</p> <p>- VL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부하(VH, Vehicle High) 도로 부하 계수를 사용하며, 이 경우 VH는 유엔규정 제154호 부속서 B4(Annex B4)의 제4.2.1.1.1항에 따라 정의됨</p> <p>- 보간법(interpolation method)이 사용되는 경우, VL과 VH는 유엔규정 제154호 부속서 B4의 제4.2.1.1.2항에 따라 명시됨</p> </td> </tr> <tr> <td>3.</td> <td>기술 요구사항은 유엔규정 제83호 부속서 6(Annex 6)의 제3절부터 제6절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td> </tr> </tbody> </table>	조항	세부 내용	1.	서론	1.1.	<p>제조사는 엔진의 통기 시스템이 크랭크케이스 가스를 대기로 배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p> <p>- 형식승인을 목적으로, 제조사는 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크랭크케이스 배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승인기관에 서명된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p>	1.2.	제3형 시험 요구사항에 대한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서 서식은 본 부속서의 별첨 1(Appendix 1)에 규정되어 있음	1.3.	형식승인 시 승인기관이 실증 시험을 요구하거나, 생산 적합성 시험, 사용 중 적합성 검사 또는 시장 감시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본 부속서는 유엔규정 제83호(UN Regulation No. 83)의 제5.3.3항에 따라 규정된 제3형 시험 절차(크랭크케이스 가스 배출 검증 시험)를 설명함	2.	일반 요구사항	2.1.	<p>제3형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유엔규정 제83호의 부속서 6(Annex 6)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p> <p>- 단, 아래 2.2항에 명시된 예외는 제외함</p>	2.2.	<p>사용되는 도로 부하 계수는 차량 저부하(VL, Vehicle Low)의 계수를 적용함</p> <p>- VL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부하(VH, Vehicle High) 도로 부하 계수를 사용하며, 이 경우 VH는 유엔규정 제154호 부속서 B4(Annex B4)의 제4.2.1.1.1항에 따라 정의됨</p> <p>- 보간법(interpolation method)이 사용되는 경우, VL과 VH는 유엔규정 제154호 부속서 B4의 제4.2.1.1.2항에 따라 명시됨</p>	3.	기술 요구사항은 유엔규정 제83호 부속서 6(Annex 6)의 제3절부터 제6절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조항	세부 내용																		
1.	서론																		
1.1.	<p>제조사는 엔진의 통기 시스템이 크랭크케이스 가스를 대기로 배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p> <p>- 형식승인을 목적으로, 제조사는 점화식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크랭크케이스 배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승인기관에 서명된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p>																		
1.2.	제3형 시험 요구사항에 대한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서 서식은 본 부속서의 별첨 1(Appendix 1)에 규정되어 있음																		
1.3.	형식승인 시 승인기관이 실증 시험을 요구하거나, 생산 적합성 시험, 사용 중 적합성 검사 또는 시장 감시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본 부속서는 유엔규정 제83호(UN Regulation No. 83)의 제5.3.3항에 따라 규정된 제3형 시험 절차(크랭크케이스 가스 배출 검증 시험)를 설명함																		
2.	일반 요구사항																		
2.1.	<p>제3형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은 유엔규정 제83호의 부속서 6(Annex 6)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p> <p>- 단, 아래 2.2항에 명시된 예외는 제외함</p>																		
2.2.	<p>사용되는 도로 부하 계수는 차량 저부하(VL, Vehicle Low)의 계수를 적용함</p> <p>- VL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부하(VH, Vehicle High) 도로 부하 계수를 사용하며, 이 경우 VH는 유엔규정 제154호 부속서 B4(Annex B4)의 제4.2.1.1.1항에 따라 정의됨</p> <p>- 보간법(interpolation method)이 사용되는 경우, VL과 VH는 유엔규정 제154호 부속서 B4의 제4.2.1.1.2항에 따라 명시됨</p>																		
3.	기술 요구사항은 유엔규정 제83호 부속서 6(Annex 6)의 제3절부터 제6절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9.	<p>부속서 VIII에서 정하는 저온에서의 배출을 측정하는 유형 6의 시험은 디젤 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음</p> <p>- 그러나, 제조자는 승인기관에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EGR)의 저온에서의 작동을 포함한 운영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해 정보는 배출에 관한 일체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야 함</p> <p>-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승인기관은 저온에서 질소산화물 후처리 도구 및 EGR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표1-3] 부속서 VIII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내구성 검증 (제5형 시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조항</th> <th>세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적합성 선언</td> </tr> <tr> <td>1.1.</td> <td>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배출가스 내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서 양식은 본 부속서의 부록 1(Appendix 1)에 규정되어 있음</td> </tr> <tr> <td>1.2.</td> <td>사용 중 적합성 점검 또는 시장 감시 점검을 목적으로, 주행거리 주요 내구기간 또는 추가 내구기간 내에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시험은 형식승인을 위한 배출가스 한계 준수</td> </tr> </tbody> </table>	조항	세부 내용	1.	적합성 선언	1.1.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배출가스 내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서 양식은 본 부속서의 부록 1(Appendix 1)에 규정되어 있음	1.2.	사용 중 적합성 점검 또는 시장 감시 점검을 목적으로, 주행거리 주요 내구기간 또는 추가 내구기간 내에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시험은 형식승인을 위한 배출가스 한계 준수										
조항	세부 내용																		
1.	적합성 선언																		
1.1.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배출가스 내구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서 양식은 본 부속서의 부록 1(Appendix 1)에 규정되어 있음																		
1.2.	사용 중 적합성 점검 또는 시장 감시 점검을 목적으로, 주행거리 주요 내구기간 또는 추가 내구기간 내에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시험은 형식승인을 위한 배출가스 한계 준수																		

	<p>입증 요건을 따라야 함</p> <p>- 또한, 해당 시험은 시험 전 차량 검사 등 사용 중 적합성 및 시장 감시 시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p>
1.3.	차량의 주행거리가 15,00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열화계수(deterioration factors)를 적용하지 않음
1.4.	추가 내구기간에 수행된 시험의 경우, 시험 평가 시에는 EU 규정 2024/1257의 부속서 IV의 표 2에 명시된 해당 내구성 승수(durability multiplier)를 적용해야 함
10.	규정(EU) 2024/1257호에 따라 형식 승인이 된 차량에 대하여, 제조자는 규정(EU) 2024/1257호의 부속서 IV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차량의 내구연한 중 부속서 III에 의해 개정된 유엔 규정 제168호에 따라 결정되고 해당 부속서에 따라 수행된 RDE 시험에서 배출된 해당 차량의 최종 RDE 결과값이 규정(EU) 2024/1257호의 부속서 I에서 정하는 관련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
11.	부속서 III(2)의 요건은 규정(EU) 2024/1257호에 의거한 영세 소규모 제조자에 부여된 배출 형식 승인에는 적용할 수 없음

[표2] OBD 시스템에 관한 배출 형식 승인 요건(4조)

세부 내용	
제조자는 OBD 시스템이 부속서 XI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보장하여야 함	

[표3] 탑재 연료 및 전기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도구에 관한 배출 형식 승인 요건(5조)

조항	세부 내용
1.	<p>제조자는 다음의 M1 및 N1 범주의 차량에 차량 작동을 위해 사용된 연료 및 전기 에너지의 양에 관한 결정, 저장 및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작성용 도구가 장착되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함</p> <p>(a) 광물성 디젤, 바이오 디젤, 휘발유, 에탄올 또는 이들의 합성연료에 의해 전적으로 구동되는 순수 ICE 및 비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NOVC-HEV)</p> <p>(b) 전기 및 (a)호에서 정하는 일체의 연료에 의해 구동되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OVC-HEVs).</p>
2.	규정(EU) 2024/1257호의 제4조(6)항 (c)호에서 정하는 탑재 연료 및 전기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 도구는 본 규정의 부속서 XXII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 붙임 1 부속서 I의 그림 I.2.3 참조
2) 붙임 1 부속서 III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내구성 검증 참조

□ 배출 형식 승인

- 배출 형식 승인 신청 : 제조자는 규정(EU) 2024/1257호에 의거해 본 규정 부속서 I의 첨부 3에서 정하는 표준 정보문서에 따라 작성된 승인 신청서를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조자는 형식 승인 부여 기관에 아래표의 정보를 제출해야 함

[표4] 형식 승인 기관 제출 정보

조항	세부 내용
a.	‘스파크 점화 엔진’ 장착 차량에 있어서, 당해 비율이 UN 규정 제154호의 부속서 C5에 의거 실증용으로 선택된 유형 1의 시험 시작부터 존재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배기가스 촉매 또는 촉매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UN 규정 제154호의 제6.8.2항의 표 4A에서 정하는 OBD 임계치를 초과하는 배출을 초래하는 총 발화 사건 중 최소 오발화 비율에 대한 제조자의 선언;
b.	차량 운전자에게 오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 OBD 시스템에서 사용된 오작동 표시기의 상세 내용
c.	OBD 시스템이 부속서 XI에서 정하는 OBD 요건을 준수한다는 제조자의 선언
d.	배출 통제 시스템의 무단변경 및 수정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의 상세 내용으로서, 부속서 XIV에 부합하고 부속서 XI 및 XVI의 요건에 대한 내구연한 값의 기록을 포함한 배출 통제 컴퓨터와 주행 거리계를 포함하는 것
e.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UN 규정 제154호의 제6.8.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차량군의 세부 내용
f.	적절할 경우, 승인 연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를 첨부한 기타 형식 승인서의 사본
※ (d)의 목적을 위해 배출 통제 컴퓨터의 무단변경 및 수정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에는 제조자가 승인한 프로그램이나 측정방법을 사용한 업데이트용 시설이 포함되어야 함 ※ 부속서 I의 그림 1.2.3에서 정하는 시험의 경우, 제조자는 배출 형식 승인 시험을 담당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에 승인 대상 형식을 대표하는 차량을 제출하여야 함 ※ T단일 연료, 이중 연료 및 플렉스 연료 차량의 배출 형식 승인 신청은 부속서 I의 1.1항과 1.2항에서 정하는 추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형식 승인 후 발생하는 시스템, 부품 또는 별도 기술 단위의 제조 변경사항은 원래의 특징이나 기술적 지표가 엔진이나 오염 통제 시스템의 작동과 그로 인한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당해 형식 승인을 자동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음 ※ 제조사는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 의해 개정된 UN 규정 제83호의 부속서 4, 제5.9항의 표 A4/2 및 부속서 5의 표 1과 2에 명시된 형식에 따라, 시험 투명성에 관한 자료를 형식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조자는 UN 규정 제83호 부속서 4 및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서 요구하는 이용 중인 모든 적합성 관련 데이터를 배출 형식 승인 대상 차량을 위한 ISC용 전자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배출 형식 승인 개정 : 규정(EU) 2024/1257호 의거 부여된 배출 형식 승인의 일체의 연장에 대해서는 규정 2018/858호의 제27조, 33조 및 34조를 적용하여야 함
- 제조자의 요청에 따른 부속서 I의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 형식 승인 연장을 위한 조항은 동일 형식의 차량에 한하여 추가 시험을 할 필요가 없이 적용하여야 함

[표5] 배출 형식 승인 연장에 대한 규정 개정

<개정전> 규정(EU) 2024/1257	<개정 후> 규정(EU) 2018/858
<p>제11조 3항 시스템, 구성 요소 및 별도 기술 단위의 배출 유형 승인과 관련된 회원국의 특정 의무 승인 기관은 최초 배출 형식 승인 당시 적용되었던 조건에 따라 대체 오염 제어 시스템의 EU 배출 형식 승인 연장을 계속 승인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기관은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대체 오염 제어 시스템의 판매 또는 차량 설치를 금지해야 함 	<p>제27조 EU 유형 승인 승인, 수정, 거부 및 철회 통지</p> <p>1. 승인 기관은 EU 형식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수정할 때 다른 회원국의 승인 기관, 시장 감시 기관 및 위원회에 형식 승인을 부여한 각 유형의 차량, 시스템, 구성 요소 및 별도 기술 단위에 대한 EU 형식 승인 인증서 사본과 제30조에 언급된 시험 보고서를 포함한 첨부 문서를 제공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본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이행 조치에 따라 공통 보안 전자 교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함 <p>2. 승인 기관은 3항에 언급된 이행 조치에 따라 공통 보안 전자 교환 시스템을 통해 EU 유형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다른 회원국의 승인 기관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함</p> <p>3. 공통 보안 전자 교환 시스템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공될 전자 문서의 형식, 교환 메커니즘, EU 형식 승인 부여, 그 변경, 거부 및 철회에 대한 당국의 통지 절차, 그리고 관련 보안 조치를 규정하는 이행 조치를 채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이행 조치는 제83조(2)항에 언급된 심사 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최초의 이행 조치는 2020년 7월 5일까지 채택되어야 함 <p>제33조³⁾ EU 유형 승인 수정에 대한 일반 조항</p> <p>1. 제조업체는 부속서 II에 나열된 규제 행위에 따른 확장 문서 패키지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제26조(4)에 언급된 정보 패키지에 기록된 세부 사항의 변경 사항을 EU 유형 승인을 부여한 승인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기관은 해당 변경 사항이 제34조에 따라 EU 형식 승인의 개정 또는 연장 형태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해당 변경 사항이 새로운 EU 형식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해야 함 <p>2. 수정 신청은 기존 EU 유형 승인을 부여한 승인</p>

	<p>기관에만 제출해야 함</p> <p>3. 승인 기관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검사 또는 시험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p> <p>4. 승인 기관이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검사 또는 시험을 기초로 EU 형식 승인 요건이 계속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4조에 언급된 절차가 적용됨</p> <p>5. 승인 기관이 정보 패키지에 기록된 세부 사항의 변경 사항이 기존 형식 승인의 연장으로 충족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형식 승인을 수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제조업체에 새로운 EU 형식 승인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함</p> <p>제34조 EU 유형 승인의 개정 및 확장</p> <p>1. 승인 기관이 제26조(4)에 언급된 정보 패키지에 기록된 세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형의 차량,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별도 기술 단위가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사나 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정안을 '개정안'으로 지정함</p> <p>- 이러한 경우 승인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지체 없이 정보 패키지의 개정된 페이지를 발행하고, 각 개정 페이지에 변경 사항의 성격과 재발행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보 패키지의 통합되고 업데이트된 버전을 발행해야 함</p> <p>2. 승인 기관이 정보 패키지에 기록된 세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 수정 사항을 '연장'으로 지정함</p> <p>(a) 기존 EU 유형 승인의 기초가 된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나 테스트가 필요함</p> <p>(b) 첨부 파일을 제외한 EU 유형 승인 인증서의 모든 정보가 변경된 경우</p> <p>(c) 부록 II에 나열된 모든 규제법에 따른 새로운 요구 사항은 승인된 유형의 차량,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별도의 기술 단위에 적용됨</p> <p>-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 기관은 지체 없이</p>
--	--

	<p>갱신된 EU 형식승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서에는 이미 부여된 연속적인 연장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연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함</p> <p>- 해당 승인 인증서에는 연장 사유, 재발급일,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p> <p>3. 정보 패키지의 수정된 페이지 또는 정보 패키지의 통합되고 업데이트된 버전이 발행될 때마다 정보 패키지의 색인은 최신 확장 또는 개정 날짜 또는 업데이트된 버전의 최신 통합 날짜를 표시하도록 수정되어야 함</p> <p>4. 제2항(c)에 언급된 새로운 요건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차량 유형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차량이 속한 범주가 아닌 다른 차량 범주와 관련된 경우, 차량 유형의 유형 승인에 대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음</p>
--	--

○ 특별 관리 조항

1. 배출 형식 승인은 이행 규정(EU)2025/YY4) 또한 준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 (EU) 2024/1257호에 의거 부여되어야 함
2. 규정(EU)2024/1257호의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소규모 제조자 및 영세 소규모 제조자가 제작하고 시장에 출시한 차량에 대한 배출 형식 승인은 규정(EC) 715/2007호의 제4조 및 5조와 이행 규정(EU) 2017/1151호에 의거 부여되어야 함
3. 본 규정에 따라 형식 승인이 되고 ‘유로 7-TEMP’ 차량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부속서 I의 첨부 6의 표 1의 요건과 일자를 적용하여야 함
4. 유로 6e 기준으로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이 있고, 규정 (EU) 2017/1151의 부속서 I 첨부 6의 적용 날짜를 따르고 있다면, 제조사가 새로운 차량을 ‘유로 7-TEMP’ 배출 기준에 맞춰 승인받고자 할 때, 제조사가 요건 준수를 선언하면, 새로운 형식 승인 시험은 요구되지 않음

3) 규정(EU) 2018/858 제5장 EU 유형 승인의 개정 및 유효성의 하위조항

4) [발간 부서: 2차 이행법률에 대한 참고사항 기재]

□ 적합성 : 제조 및 사용 중(In-Service)의 적합성은 아래의 표를 따름

[표6] 제조 적합성 및 사용 중 적합성

		세부 내용
제조 적합성	(1)	규정(EU) 2018/858호의 제31조에 의거 제조자가 취하여야 하는 제조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외에, 본 규정 부속서 I의 제4항과 UN 규정 제154호의 첨부사항 2에서 정하는 관련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2)	제조 적합성은 부속서 I의 첨부 4에서 정하는 형식 승인 인증서의 세부 내용에 근거하여 점검되어야 함
사용 중 적합성	(1)	규정(EU) 2024/1257호에 의거한 차량 형식 승인의 사용 중 적합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규정(EU) 2018/858호의 제31조, 규정(EU) 2018/858호의 부속서 IV 및 본 규정 부속서 II에서 정하는 제조 적합성 약정에 따라 취하여야 함
	(2)	사용 중 적합성 점검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차량의 주요 및 추가 내구 연한 동안 테일파이프 및 증발 배출이 효과적으로 제한되는지 검증하여야 함
	(3)	사용 중 적합성은 UN 규정 제83호의 부속서 4의 첨부사항 1에 따라 점검되어야 하며, 15,000Km 또는 6개월 중 나중에 도래하는 사항과 200,000Km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사항의 차량을 대상으로 함 - 증발 배출에 대한 사용 중 적합성은 UN 규정 제83호의 부속서 4의 첨부사항 1에 따라 점검되어야 하며, 30,000Km 또는 12개월 중 나중에 도래하는 사항과 200,000Km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사항의 차량을 대상으로 함
		사용 중 적합성 점검 요건은 UN 규정 제83호 부속서 4의 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 중 적합성 제품군의 차량에 대해 최종 적합성 인증서 또는 개별 승인 인증서가 발급된 후 10년까지 적용할 수 있음
	(4)	사용 중 적합성 점검은 유럽연합 내 전년도 중 사용 중 적합성 제품군 차량의 연간 판매 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사항이 아님 - 그러한 사용 중 적합성 제품군에 대하여, 제조자는 UN 규정 제83호의 부속서 4의 4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일체의 배출량 관련 보장사항과 관련 수선 보고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사용 중 적합성 제품군은 본 규정 부속서 II에 따라 여전히 시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5)	제조자와 형식 승인 기관은 부속서 II에 따라 사용 중 적합성 점검을 실시해야 함 - 기타의 형식 승인 기관, 기술 서비스 기관, 집행위원회 및 제3자는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 따라 일부에 대한 사용 중 적합성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한 점검은 규정(EU) 2022/163호 와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6)	형식 승인 기관은 UN 규정 제83호 부속서 4의 6항에 따른 준수 여부 평가에 따라 특정 제품군의 사용 중 적합성 조항에 대한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UN 규정 제83호 부속서 4의 7항에 따라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정 조치 계획을 승인하여야 함
(7)	형식 승인 기관, 기술 서비스 기관, 집행위원회 또는 제3자가 사용 중 적합성 제품군에 대해 사용 중 적합성 점검 불합격을 확정하는 경우, 규정(EU) 2018/858호의 제54조(2)항에 따라 형식 승인을 한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동 통지에 따라서 및 규정(EU) 2018/858호 제54조(5)항에 의거하여, 형식 승인	

	<p>을 한 기관은 당해 사용 중 적합성 제품군이 사용 중 적합성 점검에 불합격하였음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자와 형식 승인을 한 기관은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 의해 개정된 UN 규정 제83호의 부속서 4의 6항과 7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조자는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형식 승인을 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p> <p>형식 승인을 한 기관이 사용 중 적합성 제품군이 사용 중 적합성 점검에 불합격하였음을 확인한 형식 승인 기관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 (EU) 2018/858호의 제54조 (5)항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어야 함</p>
(8)	<p>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외에 부속서 II에 따라 형식 승인이 된 차량에 대해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p> <p>(a) 규정(EU) 2018/858호의 제3조 (8)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다단계 형식 승인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규정 부속서 II의 3.11호에서 정하는 다단계 승인을 위한 조항에 따라 사용 중 적합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함</p> <p>(b) 규정(EU) 2018/858호의 부속서 II의 파트 III의 첨부 1에서 정하는 영구차, 규정 (EU) 2018/858호의 부속서 II의 파트 III의 첨부 2에서 정하는 무장차량 및 규정 (EU) 2018/858호의 부속서 II의 파트 III의 첨부 3에서 정하는 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p> <p>- 규정(EU) 2018/858호의 부속서 II의 파트 III의 첨부 4에서 정하는 기타 모든 특수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본 규정의 부속서 II에서 정하는 다단계 형식 승인 규칙에 따라 사용 중 적합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p>

□ 오염 통제 도구에 관한 규정

○ 오염 통제 도구

1. 제조자는 규정 (EU) 2024/1257호의 범위가 적용되는 배출 형식 승인 차량에 장착하려는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가 본 규정의 제13조 및 부속서 XIII에 따라 별도의 기술 단위로 배출 형식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 통제 도구에 대한 요건은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가 UN 규정 제103호 에 의거 승인된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2. UN 규정 제154호의 부속서 A2의 부록 2.3항이 적용되는 유형에 속하고 관련 형식 승인 문서에서 정하는 차량 장착용 순정 장비 대체 오염 통제 도구는 본 규정의 부속서 XIII의 2.1호 및 2.2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 규정의 부속서 XIII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
3. 제조자는 순정 오염 통제 도구에는 인식 표시가 되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함
4. 3항에서 정하는 인식 표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함
 - (a) 차량이나 엔진 제조자의 명칭 또는 상호
 - (b) UN 규정 제154호의 부속서 A1의 3.2.12.2호에서 정하는 정보에 기록된 바와 같은 순정 오염 통제 도구의 제조사 및 식별 부품 번호

○ 별도 기술 단위로서의 교체용 통제 도구 형식의 배출 형식 승인 신청

1. 제조자는 별도 기술 단위로서의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 형식의 배출 형식 승인을 위한 신청서⁵⁾를 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함
2. 1항의 요건 이외에, 제조자는 배출 형식 승인 시험을 담당하는 기술 서비스 기관에 다음 모든 사항을 제출해야 함

[표기] 제조자 제출 사항

순번	세부 내용
(a)	신규 순정 장비 오염 통제 도구가 장착된 것으로 규정(EU) 2024/1257호에 따라 승인된 형식의 차량(들)
(b)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 형식의 표본 1개
(c)	OBD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장착용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의 경우,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 형식의 추가 표본

3. 표7 (a)호의 목적을 위하여, 시험용 차량은 기술 서비스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신청인이 선정하여야 함
4. 시험용 차량은 UN 규정 제154호의 부속서 B6의 2.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5) 부속서 XIII의 첨부 1에서 정하는 정보문서의 모델에 따라 작성

5. 시험용 차량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표8] 시험용 차량 요건

순번	세부 내용
(a)	배출 통제 시스템의 하자가 없을 것
(b)	일체의 과도하게 마모되거나 오작동하는 배출 관련 순정 부품은 교체 또는 수선될 것
(c)	배출 시험 전에 적절히 조정되고 제조사의 사양에 맞게 설정될 것

6. 표7 (b)호 및 (c)호의 목적을 위하여, 표본에는 신청인의 이름이나 상호 및 상업적 목적이 분명하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함

7. 제2항 (c)호의 목적을 위하여, 표본은 제3조 (20)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변질되어야 함

○ 별도 기술 단위로서의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의 배출 형식 승인을 위한 관리 조항

1.본 규정 부속서 XIII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식 승인 기관은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에 대해 별도의 기술 단위로서 배출 형식 승인을 하여야 하며, 규정(EU) 2020/683호의 부속서 IV에서 정하는 번호부여 시스템에 따라 배출 형식 승인 번호를 발급하여야 함

- 승인 기관은 타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 유형에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 없음
- 동일한 형식 승인 번호로 여러 다른 차량 유형에서 당해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 유형을 사용할 수 있음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승인 기관은 부속서 XIII의 첨부 2에서 정하는 모델에 따라 확정된 배출 형식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3. 배출 형식 승인 신청인이 승인 기관이나 기술 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하여 당해 교체용 오염 통제 도구가 UN 규정 제154호의 부속서 A2의 첨부 2.3항에 명시된 형식의 도구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형식 승인의 부여는 본 규정의 부속서 XIII의 4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의 준수 여부 검증에 의거할 수 없음

□ 조작 도구 및 조작 전략

1. 배출 형식 승인의 취득과 규정(EU) 2024/1257호 제4조 및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제조자는 조작 도구 및 조작 전략의 부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시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본 규정의 부속서 IV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조자는 규정(EU) 2024/1257호의 제4조 (5)항에 의거 조작 도구 및 조작 전략의 부재를 기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모든 관련 문서를 본 규정의 부속서 IV에서 정하는 사양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3. 제1항에 의거한 시험, 방법 및 절차는 조작 도구 및 조작 전략의 부재를 보

장하여야 하는 차량 제조자, 형식 승인 기관, 시장 감시 기관 및 기타의 행위 주체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포함되며 부속서 IV에서 정하고 있음

기어 변속기

- 제조자는 차량이 부속서 X에 따른 배출 형식 승인 관련 특별요건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

무단변경 금지, 보안 및 사이버 보안

- 제조자는 차량이 부속서 XIV에 따른 배출 형식 승인 관련 특별요건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

이행 규정(EU) 2020/683호의 개정

- 이행 규정(EU) 2020/683호의 부속서 I, IV 및VII은 본 규정의 부속서 XVIII⁶⁾에 따라 개정됨

6) 붙임 1 부속서 XVIII 이행규정 (EU) 2020/683의 개정 참조

관련 법령

-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4/1257('24.4.24)
- 위원회 이행 규정(EU) 2020/683호
-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6/679호
-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8/1725호
-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1/392호
- 유엔 규정 154호
- 유엔 규정 168호
- 유엔 규정 83호

□ **중요 부록 번역본**

○ 부속서 I의 그림 I.2.3

차량 분류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포지티브 점화 엔진이 장착된 차량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압축 점화 엔진이 장착된 차량	순수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단일 연료 방식				복수 연료 방식 ⁽³⁾			가변 연료 방식 ⁽³⁾	단일 연료 방식			
기준 연료	휘발유	LPG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바이오메탄	수소 (ICE)	휘발유 LPG	휘발유 천연가스/바이오메탄	휘발유 수소	휘발유 에탄올 (E85)	경유	휘발유	-	수소 (연료전지)
제1형 시험	적용	적용 ⁽⁵⁾	적용 ⁽⁴⁾	적용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적용	-	-
ATCT 시험 (14 °C에서)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적용	-	-
RDE 시험, 기체 오염물질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두 연료)	적용	적용	-	-
RDE 시험, 입자 수(PN)	적용	-	-	-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적용	-	-
제3형 시험 (크랭크케이스 배출가스 시험)	적용	적용	적용	-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	-	-	-
제4형 시험 (증발가스 배출 시험)	적용	-	-	-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	적용	-	-
제5형 시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내구성 시험)					(휘발유)	(휘발유)	(휘발유)	(휘발유)				
제6형 시험 (저온 배출가스 시험)	적용	-	-	-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휘발유)	적용 (두 연료)	-	-	-	-
사용 중 적합성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형식승인 시와 동일)	적용 (형식승인 시와 동일)	적용 (형식승인 시와 동일)	적용 (형식승인 시와 동일)	적용	적용	-	-
OBD (차량 자기 진단시스템)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엔진 출력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CO ₂ (이산화탄소), FC(연료소비량), 전기주행거리	적용	적용	적용	적용 ⁽²⁾	적용 (형식승인 시와 동일)	적용 (형식승인 시와 동일)	적용(휘발유) 적용 ⁽²⁾ (수소)	적용 (형식승인 시와 동일)	적용	적용	적용	적용 ⁽⁶⁾
OBFCM (차내 연료소비 모니터링)	적용	-	-	-	-	-	-	적용 (두 연료)	적용	적용	-	-

- ① 형식승인 시 차량 제조사의 적합성 선언이 요구됨
- ② 수소를 연료로 운행하는 경우, 연료소비량만을 산정함
- ③ 이중연료 차량이 가변연료 차량과 결합된 경우, 두 시험 요건 모두 적용됨
- ④ 수소를 연료로 운행하는 경우,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만을 산정함
- ⑤ 입자질량 및 입자수 기준값과 이에 따른 측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음
- ⑥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측정할 필요 없음
- ⑦ 연료 및 차량 기술에 따른 측정 항목의 적용성 및 측정 절차에 대해서는, EU 규정 2024/1257의 부속서 I 표 1에 정의된 배출가스 한계 기준을 참조할 것

○ 부속서 III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내구성 검증 (제5형 시험) - 기계 번역

3. 기술 요구사항 : RDE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UN 규정 제168호의 제6절 및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단, 아래의 항목에 명시된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3.1. 다음 정의를 제3.1항 다음에 추가한다:

‘선언된 최대 RDE 값(Declared Maximum RDE)’ 이란,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선언하며 적용 가능한 배출한계보다 낮아야 하고, 낮은 배출한계에 대한 적합성 검토 시 사용되는 배출값을 의미한다.

3.2. UN 규정 제168호의 제10.8항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10.8. 데이터 보고: 단일 RDE 시험의 모든 데이터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보고 파일 양식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3.3. UN 규정 제168호의 제10.8항 다음에 다음 항목들을 추가한다:

‘10.9. RDE 형식승인 시험 정보의 보고 및 공개

10.9.1. 제조사는 승인기관에 제출할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 보고서는 다음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i) 데이터 교환 파일

(ii) 보고 파일

(iii) 본 규정의 부속서 I 부속서 4에 명시된 차량 및 엔진 설명

(iv) 시험 차량에 설치된 PEMS의 식별 및 설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품질과 수량의 사진 및/또는 영상 등 시각 자료

10.9.2. 제조사는 제10.9.2.1항에 나열된 정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무료로, 사용자 등록이나 개인정보 제공 없이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의 위치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및 형식승인기관에 알려야 한다.

10.9.2.1. 해당 웹사이트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항목으로 와일드카드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사, 형식, 변형, 버전, 상업명, 형식승인번호

검색된 각 차량에 대해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해당 차량이 속한 PEMS 패밀리 ID
- 선언된 최대 RDE 값

10.9.2.2. 요청 시, 제조사는 제10.9.1항의 기술 보고서를 제3자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무료로,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요청한 경우, 제조사는 해당 정보 제공에 소요된 실제 내부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하고 비례적인 수수료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정보 접근을 억제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형식승인기관도 제3자 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요청 시,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4.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1항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PN 분석기는 약 10nm부터 65%의 효율로 입자를 계수하는 예비처리 장치와 입자 검출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3.5.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1항 그림 A5/1의 범례는 다음과 같이 읽는다:

(점선은 선택 부품을 나타냄. 가열구간은 촉매 활성화 상태여야 함. EFM = 배기 질량 유량계, d = 내부 직경, PND = 입자수 회석기)

3.6.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1항의 네 번째 문장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PN 분석기는 벽면 온도 $\geq 573K$ 에서 촉매 활성을 유지하는 가열 구간을 포함해야 한다.

3.7.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1항의 마지막 문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3.8.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2항의 표 A5/3a는 다음과 같다:

$d_p[nm]$	10	15	30	50	70	100	200
E(dp) PN 분석기	0,1 - 0,5	0,3 - 0,7	0,75 - 1,05	0,85 - 1,15	0,85 - 1,15	0,80 - 1,20	0,80 - 2,00

3.9.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1항의 표 A5/3a 하단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E(dp)의 효율은 PN 분석기의 판독값과, 전기 이동 직경 10nm에서 90% 이상의 계수 효율을 갖고 선형성이 검증된 응축입자계수기(CPC) 또는 전류계가 동일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동일한 단일분산 입자의 수농도를 측정한 값과의 비율로 정의된다.

3.10.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3항의 세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기준 장비는 전기 이동 직경 10nm에서 90% 이상의 계수 효율을 가지며, 선형성이 검증된 전류계 또는 응축입자계수기여야 한다.

3.11.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3항의 첫 문단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또는, UN 규정 제154호(WLTP)에 적합하고, 전기 이동 직경 10nm에서 90% 이상의 계수 효율을 가진 입자수 측정 시스템을 기준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3.12. UN 규정 제168호 부속서 5 제6.4항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시스템은 최소 희석 상태에서 $\geq 30\text{nm}$ 의 테트라콘탄 입자에 대해 cm^3 당 $\geq 10,000$ 개의 입자 농도 조건에서 99.9% 이상의 제거율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지름 $> 50\text{nm}$ 및 질량 $> 1\text{mg}/\text{m}^3$ 의 테트라콘탄에 대해서도 99.9% 이상의 제거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 부속서 XVIII 이행규정 (EU) 2020/683의 개정 - 기계 번역

부속서 XVIII

이행규정 (EU) 2020/683의 개정

부속서 I의 해설 각주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각주 (116)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 ‘(116) 유로 등급(Euro level)의 번호를 기재하고,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추가할 것:
- 규정 (EC) 제715/2007이 적용되는 경우(‘Euro 6’): 이행규정 (EU) 2017/1151의 부속서 I, 부속서 6의 표 1에 설정된 형식승인 기준에 해당하는 문자 기호
 - 규정 (EU) 2024/1257이 적용되는 경우(‘Euro 7’): 이행규정 (EU) 2025/XX의 부속서 I, 부속서 6의 표 1에 명시된 관련 문자 기호’

(2) 각주 (190) 및 (191)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90) 본 규정에 대한 참조 번호는 공보국(publication office)이 삽입하며, 이는 규정 (EU) 2024/1257의 적용을 위한 이행규정을 설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채택한 것으로, 차량 및 엔진,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시스템, 부품, 분리 기술 단위에 대한 형식승인 규정을 배출가스 및 배터리 내구성과 관련하여 명시한다 (‘Euro 7’).

‘(191) 규정 (EC) 제715/2007이 적용되는 경우(‘Euro 6’): 기본 규제 행위 및 최종 개정 규제 행위의 번호를 기재

- 규정 (EU) 2024/1257이 적용되는 경우(‘Euro 7’): 부속서 IV 제3.1항 예시 (e)에 따라, 관련 이행규정의 형식승인 인증서 번호를 모두 기재할 것. 관련 인증서 번호는 줄 단위로 나열할 것.’

부속서 IV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2.2항(제2절)에 다음의 (d) 항이 추가된다:

‘(d) 규정 (EU) 2024/1257에 따라 채택된 이행규정의 번호를 기재하며, 이는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2) 제2.3항(제3절)에 다음의 (e) 항이 추가된다:

‘(e) 규정 (EU) 2024/1257 하에 적용되는 관련 이행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형식승인이 있는 경우, 마지막 개정 이행규정 번호 뒤에 해당 이행규정 표에서 지정된 두 자리 문자 기호를 직접 연결하여 기재할 것. 이때 숫자와 문자 기호 사이에 별표(*)를 삽입하지 말 것.’

(3) 제3.1항에 다음의 (e) 항이 추가된다.

'(e) 이행규정 (EU) [공보국이 본 규정의 참조 번호 삽입 예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할 것: e4*2025/XX*2025/XXMA*00003*00(190).'

부속서 VIII의 부속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Model B-Part 2(차량 범주 M1 및 N1) 항목의 제48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48. 배출가스 (162)(163)(164):

관련 형식승인 인증서 번호(191): ...'